

「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2와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2년 3월 11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##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1. 개정사유

-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있어 자문위원회와 의회 간 유대관계 및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함을 물론 발전된 자문위원회 정립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위원회 구성 및 당연직 위원 위촉 규정을 개정
- 위원회 회의시기를 정기 회기에서 필요시로 개정

3. 자치법규안: 별도 붙임

4. 예고기간: 2022. 3. 11. ~ 3. 15.(5일간)

### 5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. 3. 15.(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흥군의회(참조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제출사항

- (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(3) 그 밖의 참고 의견 등

#### 나.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(1) 일반우편: (59542)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고흥군의회(참조: 의회사무과장)
- (2) 전화: 061-830-6065, FAX: 061-830-5595

- 붙임 1.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 
      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 
      3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## <붙임1>

###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20명”을 “13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.

같은 조 제3항 중 “의정담당”을 “의사팀장”으로 한다.

같은 조 제3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변경한다.

제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.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<u>2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</u>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③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<u>의정담당</u>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제5조(위촉)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3조(구성 등) ① ----- ----- -- <u>13명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위원장은 의장이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. ---- ----- -----</p> <p>③ ----- ----- <u>의사팀장</u> ----- -----</p> <p>1. ~ 3. (제3목 생략 현행 제4목을 제3목으로 변경)</p> <p>제5조(위촉) ----- ----- -----</p> <p>1. <u>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당연</u></p>

1. ~ 3. (생략)

제7조(회의) ① 정기회는 매년 4회(분기별) 개최하며, 임시회는 수시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(생략)

직 위원으로 위촉한다.

2. ~ 4. (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)

제7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##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고흥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·자문하기 위하여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설치 및 기능)** 고흥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고흥군의회 의정자문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고,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
2.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문
3.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
4.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

**제3조(구성 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의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의사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
2. 안건 · 회의록 작성 및 보존
3.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

**제4조(임기)**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5조(위촉)**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

1.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.
2. 행정 · 문화 · 관광 · 예술 · 환경 · 교통 · 의료 · 농어업 · 교육 · 건설 · 사회복지 및 법률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
4.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

**제6조(위촉 해제)** 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
2.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3.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
4.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

**제7조(회의)**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8조(의견청취)**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**제9조(수당 등)**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「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지급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. <신설 2019. 11. 4.>

**제10조(운영세칙)**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3]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 \_\_\_\_\_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 \_\_\_\_\_

○ 전 화 번 호 : \_\_\_\_\_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